■ 병역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3호서식] <개정 2021. 6. 23.>

병역이행일 등 신청(희망시기변경·취소 신청)서

※ 작성방법 및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경우 √표를 합니다. (앞쪽)

처리기간 우선 병역판정검사, 입영판정검사, 재학생 입영·소집(취소), 입영·소집시기 변경: 1일
국외체재자 병역판정검사·재병역판정검사·입영·소집: 2일

구 분	[ ]우선 병역판정검사 [ ]입영판정검사 [ ]재학생 입영·소집(취소) [ ]국외체재자 병역판정검사·재병역판정검사·입영·소집 [ ]재학생 입영·소집시기 변경	
병역의무자	성명	생년월일
	전화번호	휴대전화번호
	전자우편주소	
	주소	
	통지서 수령인	본인과의 관계
병역사항	[ ]병역판정검사·재병역판정검사 대상자 [ ]현역병(상근예비역 포함)입영 대상자 [ ]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	
	[ ]승선근무예비역·전문연구요원·산업기능요원 군사교육소집 대상자 [ ]대체복무요원소집 대상자 [ ]기타( )	
[ ] 우선 병역판정검사 신청	[ ]국외출국(예정) [ ]산업기능요원 편입 [ ]기타( )	
	병역판정검사 희망일: 년 월 일	
[ ] 입영판정검사 신청	입영판정검사 희망일: 년 월 일	
[ ] 국외체재자 병역판정검사·재병역판정검사·입영·소집 신청	[ ](재)병역판정검사 신청	(재)병역판정검사 희망일: 년 월 일
	[ ]입영·소집 신청	년 [ ] 분기 [ ] 월 [ ] 언제라도 좋다
[ ] 재학생 입영·소집 신청(취소), 입영·소집 시기 변경 신청	학적사항 ※ 입영·소집 신청자 공통	학교 학과 학년(재학·휴학·퇴학·졸업)
	[ ]입영·소집 신청	년 [ ] 분기 [ ] 월 [ ] 언제라도 좋다
	[ ]입영·소집 신청 취소	[대학(교) 년 재학, 복학] 학업계속
	[ ]입영·소집시기 변경 신청	년 분기 월(을) 년 분기 월(으로)

「병역법 시행령」 제13조제3항, 제18조의3제4항, 제126조제1항, 제128조의2제1항 및 「병역법 시행규칙」 제15조, 제16조의2, 제85조, 제86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의무자와의 관계

○○지방병무청(병무지청)장 귀하

신청서 제출 시 별도의 수수료는 없습니다.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

첨부서류

구분		신청인(대표자) 제출서류	담당 공무원 확인사항
우선 병역판정 검사	국외취업자	국외여행 허가사항 확인으로 대신합니다.	없음
	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	해운업체 등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 및 고용예정 증명서	없음
	산업기능요원의 편입을 지원한 사람	병역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	없음
	기타	관계 증명서류	없음
입영판정검사를 원하는 사람		없음	없음

작성방법 및 유의 사항

1. 구분란의 해당사항에 √표시를 한 후 병역의무자란과 병역사항을 적습니다.
2. 신청을 원하는 해당사항에 √표시를 한 후 그 내용을 적습니다.
3. 입영·소집 신청자 유의사항

가. 입영·소집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영·소집 신청을 취소한 사람은 취소 후 2개월이 지나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.

나. 입영·소집시기 변경은 한 번만 신청할 수 있으며(이미 입영·소집이 통지된 사람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), 입영·소집일부터 60일 이내에 입영·소집시기 변경을 신청한 사람은 입영·소집 신청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.